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1
----------	------

2025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6일, 이영실 의원 외 17명
-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9일
- 다. 상정일자: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으로 시민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해져 이륜자동차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수한 도시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는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안 제2조~제4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안 제6조).
-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 홍보사업 운영(안 제8조).
-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9조).
- 표창제도 도입(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의 총칙 규정과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제10조(표창 등)까지의 실체 규정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조 제목	내 용
총칙	제1조	목적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 등 주요 용어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 우선 적용
실체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음 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자치구 자료 제출 요청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규정
	제7조	교육 및 지원	· 소음관리 담당자 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지원
	제8조	홍보사업	· 시민 대상 소음 저감 홍보사업 추진
	제9조	재정지원 등	· 자치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	표창 등	· 소음 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나. 검토의견

- 2025년 3월 현재, 서울시 등록 이륜자동차는 426,240대로 전체 자동차의 13.4%를 차지¹⁾하고 있고 최근 레저 및 배달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유발되는 소음에 대한 단속 실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 발생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소음기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교통 부서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자치구 환경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발표²⁾한 이륜자동차 관련

1) 서울시 자동차 등록(월별/구별) 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25.4.15. 기준)

소음 민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19년~ 2023년)에 따르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서울시 과태료 부과실적 없음).

- 본 제정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행정 미비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태료 부과가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2019~2023년 전국 및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민원	298	933	2,170	2,450	4,391
	과태료	1	15	41	45	50
서울	민원	53	70	126	259	463
	과태료	0	0	0	0	0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 조례 체계와 내용상 무리 없이 구성³⁾되어 있음.
-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실무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안 제6조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전문 기관 등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 및 점검 계획수립 지원,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재정 지원,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견 없음.

2) 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늘었는데, 단속은 제자리걸음(김위상 국회의원 보도자료, '24.10.8.)

3)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4.)

-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륜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의지 및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 관계기관 등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